

2015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협력자 1”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이하 “협력자 2”라 한다)은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교육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함께 노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협력자 1”과 “협력자 2”가 “본 사업”의 목적 실현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목표) “협력자 1”과 “협력자 2”는 “본 사업”을 신의·성실의 자세로 적극 추진하여 사업 목표인 아래 사항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학습결손 예방과 치유를 통한 학력증진
2.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3.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 구축

제3조 (사업의 수행) 협약 당사자인 “협력자 1”과 “협력자 2”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아래 사항을 협약한다.

1. “협력자 1”은 43,250,000원, “협력자 2”는 40,000,000원을 “본 사업”의 민간 경상이전 사업비로 지원하고 이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본 사업”의 추진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한다.

나. “협력자 1”은 “본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사업 공모 및 지원 대상 기관 선정과 오리엔테이션, 점검·평가·정산을 실시한다.

다. “협력자 2”는 지원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 및 점검·평가에 참여한다.

라. 선정기관 보조금은 협약 체결 후 선정기관의 교부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협력자 1”과 “협력자 2”가 각각 교부한다.

마. “협력자 1”은 지원 대상기관으로부터 “협력자 1”과 “협력자 2”가 지원한 보조금 총액에 대해 일괄 정산을 받아 확인한 후, “협력자 2”에게 정산 확인 공문을 발송한다.

2. “협력자 1”과 “협력자 2”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3. “협력자 1”과 “협력자 2”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원활한 협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4조 (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협력자 1”과 “협력자 2”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자 1”과 “협력자 2”의 협의 및 결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서명 날인 후 상호 교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4. 21.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류 제 천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장 김 영 배 (인)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협약서

2015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협력자1”이라 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협력자2”, 기관 대표를 “협력자3”이라 하여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사업명 : 학교-지역사회간 연계 협력을 통한 부모-자녀 가족관계증진 프로젝트
“장석마을 우리가족”
- 사업기간 : 2015.04.21. ~ 2016.02.28.
- 보조금 총액 : 금 일천일백만원 (₩ 11,000,000)
-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 금 일천일백만원 (₩ 11,000,000)

제1조(목적) 본 약정은 “협력자1”과 “협력자2”로부터 『2015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들이 본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의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협력자3”은 교부된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익추구, 비정치·비영리의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준수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예산의 교부 및 사용) ① “협력자3”은 사업 협약 체결 전에 사업계획서와 교부청구서를 “협력자1”과 “협력자2”에게 제출하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협력자3”에게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협력자3”은 교부 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협력자1”과 “협력자2”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상근직원의 급여 및 사무실 관리비 등 정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사업의 실시) ① “협력자3”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자3”은 “협력자1”과 “협력자2”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전용 통장의 직불카드를 집행하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및 보고) ① “협력자3”은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력자1”과 “협력자2”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력자3”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협력자3”은 즉시 이 사실을 “협력자1”과 “협력자2”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협력자3”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협력자1”이 정한 기간에 사업추진결과보고서와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협력자1”에게 제출하고, 집행 완료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발생이자 포함)은 “교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협력자3”은 사업이 중단 및 폐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추진결과보고서와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협력자1”에게 제출하고, 중단 및 폐지에 의한 집행 완료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발생이자 포함)은 “교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점검 및 지도) 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협력자3”에 대한 사업의 추진 경과, 장부 및 서류 등의 점검 등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회계장부의 비치) ① “협력자3”은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는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폐지) 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협력자3”이 협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협력자3”에게 사업 추진의 중단 및 본 약정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협력자3”이 이에 반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협력자1”과 “협력자2”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협력자3”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협력자1”, “협력자2”, “협력자3”이 서명 날인한 후에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4. 21.

“협력자1”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류 제 천 (인)

“협력자2”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김 영 배 (인)

“협력자3”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대표 김 상 찬 (인)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협약서

2015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협력자1”이라 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협력자2”, 기관 대표를 “협력자3”이라 하여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사업명 : 저소득 가정의 정서지지 및 자조모임을 통한 가족기능향상 프로그램
“정가네 통·통·통”
- 사업기간 : 2015.04.21. ~ 2015.02.28.
- 보조금 총액 : 금 일천사백만원 (₩ 14,000,000)
-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 금 일천사백만원 (₩ 14,000,000)

제1조(목적) 본 약정은 “협력자1”과 “협력자2”로부터 『2015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들이 본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의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협력자3”은 교부된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익추구, 비정치·비영리의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예산의 교부 및 사용) ① “협력자3”은 사업 협약 체결 전에 사업계획서와 교부청구서를 “협력자1”과 “협력자2”에게 제출하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협력자3”에게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협력자3”은 교부 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협력자1”과 “협력자2”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상근직원의 급여 및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사업의 실시) ① “협력자3”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자3”은 “협력자1”과 “협력자2”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전용 통장의 직불카드를 집행하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및 보고) ① “협력자3”은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력자1”과 “협력자2”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력자3”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협력자3”은 즉시 이 사실을 “협력자1”과 “협력자2”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협력자3”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협력자1”이 정한 기간에 사업추진결과보고서와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협력자1”에게 제출하고, 집행 완료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발생이자 포함)은 “교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협력자3”은 사업이 중단 및 폐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추진결과보고서와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협력자1”에게 제출하고, 중단 및 폐지에 의한 집행 완료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발생이자 포함)은 “교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점검 및 지도) 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협력자3”에 대한 사업의 추진 경과, 장부 및 서류 등의 점검 등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회계장부의 비치) ① “협력자3”은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는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폐지) 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협력자3”이 협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협력자3”에게 사업 추진의 중단 및 본 약정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협력자3”이 이에 반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협력자1”과 “협력자2”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협력자3”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협력자1”, “협력자2”, “협력자3”이 서명 날인한 후에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4. 21.

“협력자1”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류 제 천 (인)

“협력자2”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김 영 배 (인)

“협력자3”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대표 오 정 희 (인)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협약서

2015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협력자1”이라 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협력자2”, 기관 대표를 “협력자3”이라 하여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사업명 :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및 아동의 맞춤 건강 지원을 위한 가족건강 지킴 프로그램
“Fun & Run Family”
- 사업기간 : 2015.04.21.~ 2016.02.28.
- 보조금 총액 : 금 일천삼백칠십오만원 (₩ 13,750,000)
 -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 금 일천삼백칠십오만원 (₩ 13,750,000)

제1조(목적) 본 약정은 “협력자1”과 “협력자2”로부터 『2015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들이 본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의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협력자3”은 교부된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익추구, 비정치·비영리의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예산의 교부 및 사용) ① “협력자3”은 사업 협약 체결 전에 사업계획서와 교부청구서를 “협력자1”과 “협력자2”에게 제출하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협력자3”에게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협력자3”은 교부 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협력자1”과 “협력자2”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상근직원의 급여 및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사업의 실시) ① “협력자3”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자3”은 “협력자1”과 “협력자2”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전용 통장의 직불카드로 집행하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및 보고) ① “협력자3”은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력자1”과 “협력자2”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력자3”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협력자3”은 즉시 이 사실을 “협력자1”과 “협력자2”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협력자3”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협력자1”이 정한 기간에 사업추진결과보고서와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협력자1”에게 제출하고, 집행 완료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발생이자 포함)은 “교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협력자3”은 사업이 중단 및 폐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추진결과보고서와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협력자1”에게 제출하고, 중단 및 폐지에 의한 집행 완료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발생이자 포함)은 “교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점검 및 지도) 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협력자3”에 대한 사업의 추진 경과, 장부 및 서류 등의 점검 등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회계장부의 비치) ① “협력자3”은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는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폐지) 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협력자3”이 협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협력자3”에게 사업 추진의 중단 및 본 약정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협력자3”이 이에 반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협력자1”과 “협력자2”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협력자3”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협력자1”, “협력자2”, “협력자3”이 서명 날인한 후에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4. 21.

“협력자1”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류 제 천 (인)

“협력자2”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김 영 배 (인)

“협력자3”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대표 김 연 은 (인)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협약서

2015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협력자1”이라 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협력자2”, 기관 대표를 “협력자3”이라 하여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사업명 : 저소득 취약가정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가족성장스토리”
- 사업기간 : 2015.04.21. ~ 2016.02.28.
- 보조금 총액 : 금 사백오십만원 (₩ 4,500,000)
 -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 금 사백오십만원 (₩ 4,500,000)

제1조(목적) 본 약정은 “협력자1”과 “협력자2”로부터 『2015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들이 본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의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협력자3”은 교부된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익추구, 비정치·비영리의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준수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예산의 교부 및 사용) ① “협력자3”은 사업 협약 체결 전에 사업계획서와 교부청구서를 “협력자1”과 “협력자2”에게 제출하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협력자3”에게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협력자3”은 교부 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협력자1”과 “협력자2”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상근직원의 급여 및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사업의 실시) ① “협력자3”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자3”은 “협력자1”과 “협력자2”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전용 통장의 직불카드를 집행하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및 보고) ① “협력자3”은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력자1”과 “협력자2”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력자3”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협력자3”은 즉시 이 사실을 “협력자1”과 “협력자2”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협력자3”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협력자1”이 정한 기간에 사업추진결과보고서와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협력자1”에게 제출하고, 집행 완료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발생이자 포함)은 “교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협력자3”은 사업이 중단 및 폐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추진결과보고서와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협력자1”에게 제출하고, 중단 및 폐지에 의한 집행 완료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발생이자 포함)은 “교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점검 및 지도) 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협력자3”에 대한 사업의 추진 경과, 장부 및 서류 등의 점검 등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회계장부의 비치) ① “협력자3”은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는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폐지) 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협력자3”이 협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협력자3”에게 사업 추진의 중단 및 본 약정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협력자3”이 이에 반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협력자1”과 “협력자2”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협력자3”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협력자1”, “협력자2”, “협력자3”이 서명 날인한 후에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4. 21.

“협력자1”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류 제 천 (인)

“협력자2”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김 영 배 (인)

“협력자3” 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대표 이 연 숙 (인)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협약서

2015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협력자1”이라 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협력자2”, 기관 대표를 “협력자3”이라 하여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사업명 : 저소득 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 “북극성”
- 사업기간 : 2015.04.21. ~ 2015.12.31.
- 보조금 총액 : 금육백오십만원 (₩ 6,500,000)
 - 서울특별시성북구청 : 금 육백오십만원 (₩ 6,500,000)

제1조(목적) 본 약정은 “협력자1”과 “협력자2”로부터 『2015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들이 본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의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협력자3”은 교부된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익추구, 비정치·비영리의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예산의 교부 및 사용) ① “협력자3”은 사업 협약 체결 전에 사업계획서와 교부청구서를 “협력자1”과 “협력자2”에게 제출하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협력자3”에게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협력자3”은 교부 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협력자1”과 “협력자2”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상근직원의 급여 및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사업의 실시) ① “협력자3”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자3”은 “협력자1”과 “협력자2”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전용 통장의 직불카드를 집행하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및 보고) ① “협력자3”은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력자1”과 “협력자2”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력자3”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협력자3”은 즉시 이 사실을 “협력자1”과 “협력자2”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협력자3”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협력자1”이 정한 기간에 사업추진결과보고서와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협력자1”에게 제출하고, 집행 완료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발생이자 포함)은 “교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협력자3”은 사업이 중단 및 폐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추진결과보고서와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협력자1”에게 제출하고, 중단 및 폐지에 의한 집행 완료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발생이자 포함)은 “교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점검 및 지도) 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협력자3”에 대한 사업의 추진 경과, 장부 및 서류 등의 점검 등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회계장부의 비치) ① “협력자3”은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는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폐지) 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협력자3”이 협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협력자3”에게 사업 추진의 중단 및 본 약정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협력자3”이 이에 반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협력자1”과 “협력자2”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협력자3”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협력자1”, “협력자2”, “협력자3”이 서명 날인한 후에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4. 21.

“협력자1”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류 제 천 (인)

“협력자2”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김 영 배 (인)

“협력자3”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대표 이 경 희 (인)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협약서

2015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협력자1”이라 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협력자2”, 기관 대표를 “협력자3”이라 하여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사업명 : 청소년의 꿈을 동행하다! “꿈주는 교실”
- 사업기간 : 2015.04.21. ~ 2015.12.31.
- 보조금 총액 : 금 일천삼백오십만원 (₩ 13,500,000)
 - 서울특별시성북구청 : 금 일천삼백오십만원 (₩ 13,500,000)

제1조(목적) 본 약정은 “협력자1”과 “협력자2”로부터 『2015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들이 본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의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협력자3”은 교부된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익추구, 비정치·비영리의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예산의 교부 및 사용) ① “협력자3”은 사업 협약 체결 전에 사업계획서와 교부청구서를 “협력자1”과 “협력자2”에게 제출하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협력자3”에게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협력자3”은 교부 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협력자1”과 “협력자2”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상근직원의 급여 및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사업의 실시) ① “협력자3”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자3”은 “협력자1”과 “협력자2”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전용 통장의 직불카드로 집행하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및 보고) ① “협력자3”은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력자1”과 “협력자2”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력자3”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협력자3”은 즉시 이 사실을 “협력자1”과 “협력자2”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협력자3”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협력자1”이 정한 기간에 사업추진결과보고서와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협력자1”에게 제출하고, 집행 완료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발생이자 포함)은 “교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협력자3”은 사업이 중단 및 폐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추진결과보고서와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협력자1”에게 제출하고, 중단 및 폐지에 의한 집행 완료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발생이자 포함)은 “교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점검 및 지도) 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협력자3”에 대한 사업의 추진 경과, 장부 및 서류 등의 점검 등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회계장부의 비치) ① “협력자3”은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는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폐지) 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협력자3”이 협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협력자3”에게 사업 추진의 중단 및 본 약정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협력자3”이 이에 반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협력자1”과 “협력자2”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협력자3”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협력자1”, “협력자2”, “협력자3”이 서명 날인한 후에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4. 21.

“협력자1”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류 제 천 (인)

“협력자2”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김 영 배 (인)

“협력자3”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대표 김 광 열 (인)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성북구청대응투자사업) 협약서

2015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협력자1”이라 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협력자2”, 기관 대표를 “협력자3”이라 하여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사업명 : 마을과 함께 자라는 느린아이 행복성장 프로젝트 “어깨동무”
- 사업기간 : 2015.04.21. ~ 2015.12.31.
- 보조금 총액 : 금 이천만원 (₩ 20,000,000)
 - 서울특별시성북구청 : 금 이천만원 (₩ 20,000,000)

제1조(목적) 본 약정은 “협력자1”과 “협력자2”로부터 『2015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성북교육복지센터 대응투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들이 본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의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협력자3”은 교부된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익추구, 비정치·비영리의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준수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예산의 교부 및 사용) ① “협력자3”은 사업 협약 체결 전에 사업계획서와 교부청구서를 “협력자1”과 “협력자2”에게 제출하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협력자3”에게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협력자3”은 교부 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협력자1”과 “협력자2”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상근직원의 급여 및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사업의 실시) ① “협력자3”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자3”은 “협력자1”과 “협력자2”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전용 통장의 직불카드를 집행하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및 보고) ① “협력자3”은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력자1”과 “협력자2”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력자3”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협력자3”은 즉시 이 사실을 “협력자1”과 “협력자2”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협력자3”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협력자1”이 정한 기간에 사업추진결과보고서와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협력자1”에게 제출하고, 집행 완료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발생이자 포함)은 “교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협력자3”은 사업이 중단 및 폐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추진결과보고서와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협력자1”에게 제출하고, 중단 및 폐지에 의한 집행 완료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발생이자 포함)은 “교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점검 및 지도) 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협력자3”에 대한 사업의 추진 경과, 장부 및 서류 등의 점검 등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회계장부의 비치) ① “협력자3”은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는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폐지) ① “협력자1”과 “협력자2”는 “협력자3”이 협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협력자3”에게 사업 추진의 중단 및 본 약정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협력자3”이 이에 반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협력자1”과 “협력자2”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협력자3”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협력자1”, “협력자2”, “협력자3”이 서명 날인한 후에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4. 21.

“협력자1”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류 제 천 (인)

“협력자2”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김 영 배 (인)

“협력자3” 한국생명의전화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대표 김 연 은